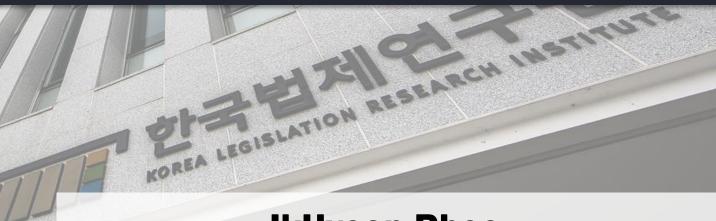
7th june, 2019

Computer Assisted Legislative Drafting

-The case of Korea -



IkHyeon Rhee

(President of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I
 - **Overview**
- П

Ш

Deliberation and Decision (National Assembly)



Promulgation and Distribution: Government Legislation System



Law-making and AI: Applicable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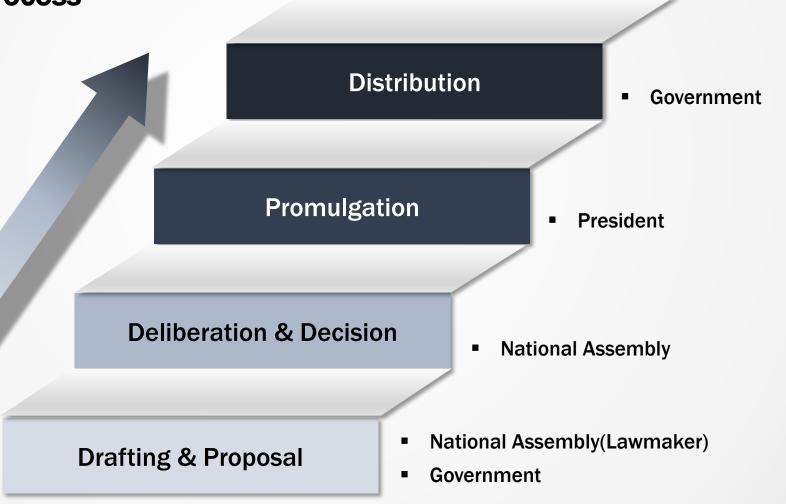






Overview

 01_{-} Law making process



Overview

02_{-} Legislation bill

Cover

의	안 번	호	제	ō	의
의		결	20 .		_ - - - - - - - - - - - - - - - - - - -
연	월	일	(제	회)	항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지명(地名)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 하여 단일 시·군·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Major contents

02_{-} Legislation bill

Directives for amendment

법률 제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 는 지물(地物)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제4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법인은"을 "법인이"로, "승 계한다"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
	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
	物)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 34. (생 략)	10. ~ 34. (현행과 같음)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④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하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 7 -

Comparative Table of previous-amended provi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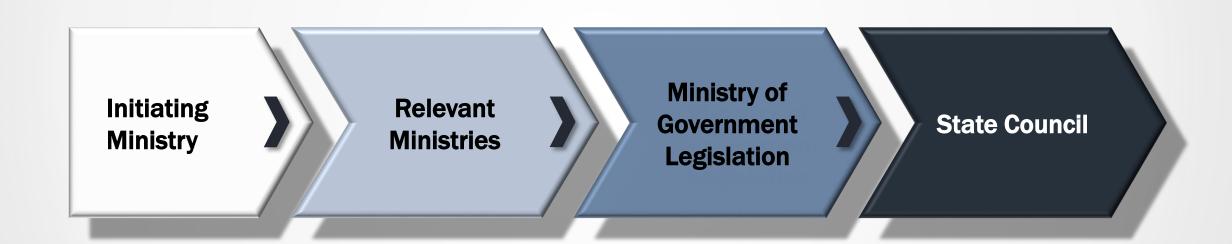
3 -

02_{-} Legislation bill : Directives for amendment

- SEC. 2. Extension of Money Follows the Person Rebalancing demonstration.
- (a) General Funding.—Section 6071(h) of the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42 U.S.C. 1396a note) is amended—
- (1) in paragraph (1)—
 - (A) in subparagraph (D), by striking "and" after the semicolon;
 - (B) in subparagraph (E),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 and"; and
 - (C)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 "(F) subject to paragraph (3), \$112,000,000 for fiscal year 2019.";
- (2) in paragraph (2)—
 - (A) by striking "Amounts made" and inserting "Subject to paragraph (3), amounts made"; and
 - (B) by striking "September 30, 2016" and inserting "September 30, 2021"; and
- (3)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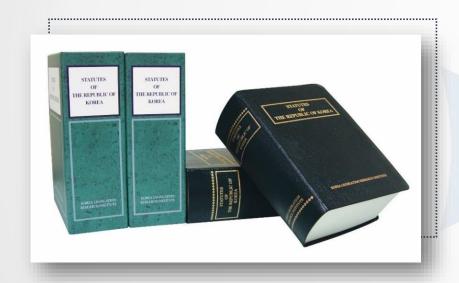


01 _ Drafting process





02_{-} Legislative drafting in the past



제2조 용이 1. - < 신 전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명"이만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망,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공장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품(地物)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자면적으로 형성되거나 중앙의 이용을 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면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면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보시"로, "법인은"을 "법인이"로, "승 계한다"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한 남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
	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지형(地形) 또는 지물(地
	物)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 34. (생 략)	10. ~ 34. (현행과 같음)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④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하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 :	7 -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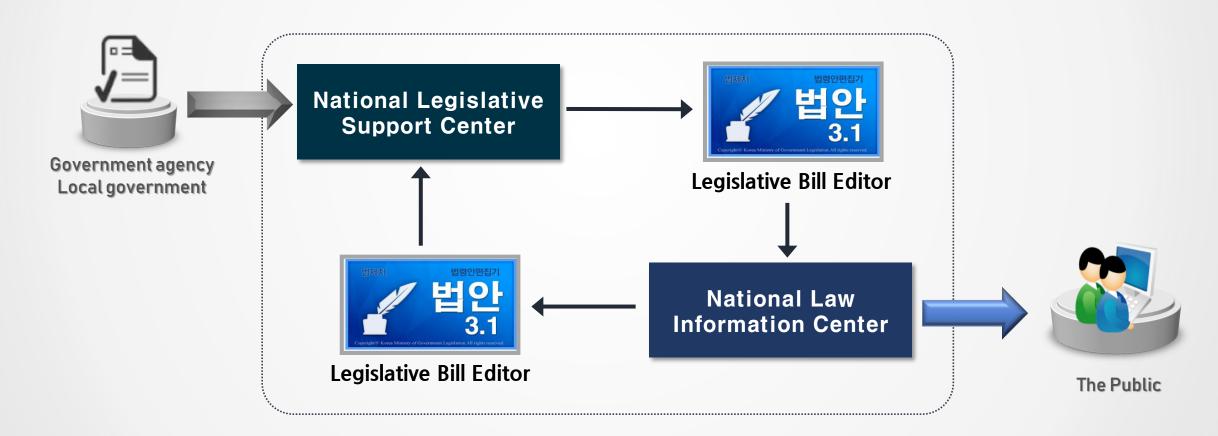
02_{-} Legislative drafting in the past

- Repitition of the same work in every stage
- Directives for amendment
 - Much time for training to obtain expertise
- Preparation of comparative tables
 Excessive work





03 Computer Assisted Drafting : Government legisl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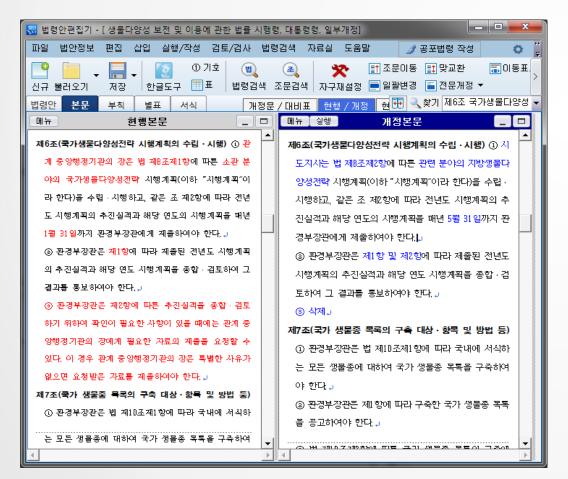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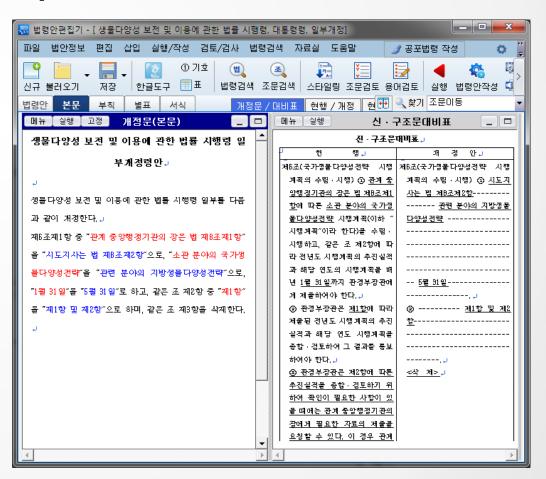
03_ Computer Assisted Drafting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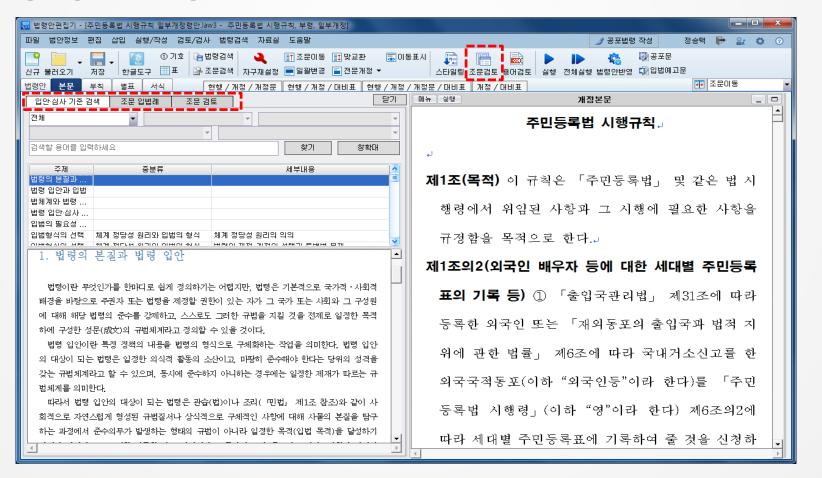
- 03_Computer Assisted Drafting (Legislative editor)
 - : Automatic creation of directives and comparative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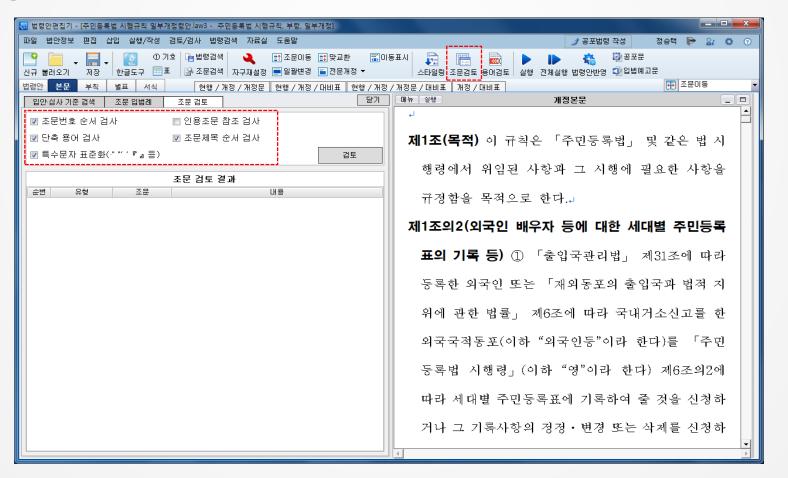


- 03_Computer Assisted Drafting (Legislative editor)
 - : Checking legislative guid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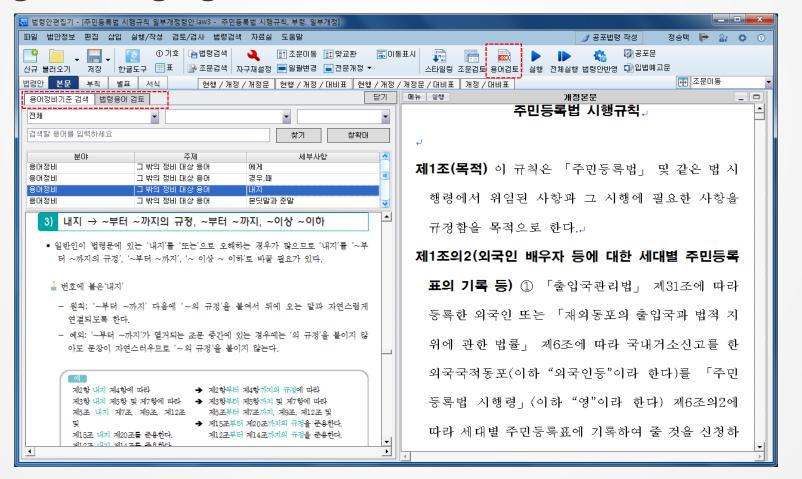


- 03_Computer Assisted Drafting (Legislative editor)
 - : Checking cited provisions





- 03_Computer Assisted Drafting (Legislative editor)
 - : Checking Plain language





Deliberation and Decision (National Assembly)





Proposal

(National Assembly)

Relevant Committee Judicial committee

Plenary Session



Deliberation and Decision (National Assembly)

Bill Management System





Promulgation and Distribution

: Government Legislation System





Present to the President

Promulgation by publishing on the government gazette

Edit and compilation

Distribution



Promulgation and Distribution : Government Legislation System



Promulgation and distribution in the past

법률 제 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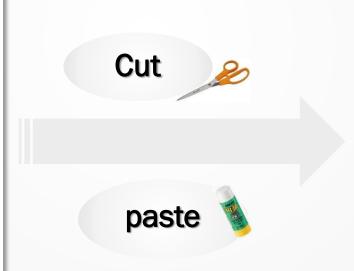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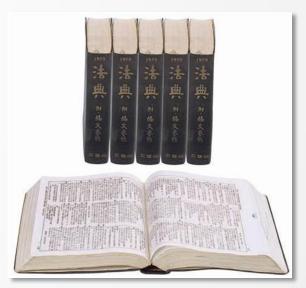
제28조의2(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분 야의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 및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기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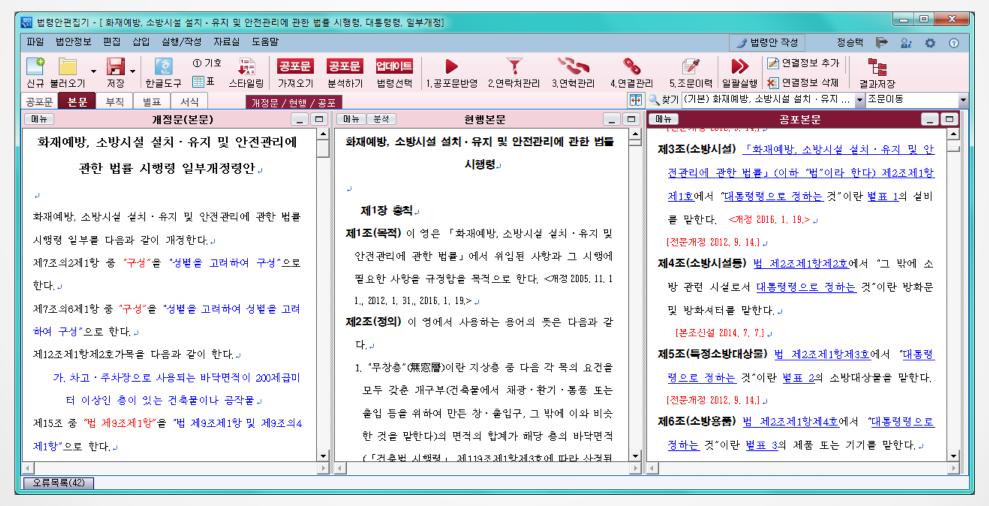




Promulgation and Distribution

: Government Legislation System







Law-making and AI: Applicable Areas

